

#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7,196,000	17,615,880
일반회계	502,812,000	15,084,360
특별회계	84,384,000	2,531,520
공기업특별회계	81,333,000	2,439,990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3,439,000	1,003,170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7,894,000	1,436,820
기타특별회계	3,051,000	91,53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77,000	20,3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4,217	2,827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1,800	7,554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304,000	9,1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84,125	23,52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39,858	28,196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29,75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3,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